

# 日本「企業會計原則」의 體系와 特徵

高 承 禧\*

- I. 日本「企業會計原則」生成의 時代의 背景
- II. 日本「企業會計原則」의 發展過程
  - 1. 「財務諸表準則」의 成立
  - 2. 「企業會計原則」의 生成과 發展
  - 3. 「企業會計原則」과 諸意見書
- III. 日本「企業會計原則」의 體系의 展開
  - 1. 總說
- IV. 一般原則의 構造와 意義
- V. 損益計算書原則의 體系
- VI. 貸借對照表原則의 體系
- VII. 聯結財務諸表原則의 體系
- VIII. 日本「企業會計原則」의 特徵
- V. 結論

## I. 日本「企業會計原則」生成의 時代의 背景

日本에서 「企業會計原則」이라는 用語가 使用되기 시작한 것은 第二次世界大戰이 끝난 以後의 일이다. 즉, 1949年에 日本經濟安定本部의 企業會計基準審議會<sup>1)</sup>가 中間報告로서 「企業會計原則」을 發表한 以來, 重要한 會計問題로 「크로즈·덮」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以前에도 會計近代化의 過程에서 會計의 統一化에 의한 統制方式이라고 하는 次元에서 본다면, 會計處理의 行動指針으로서 部分的으로 存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34年에 日本商工省臨時產業合理局에 設置된 財務管理委員會가 「財務諸表準則」을 發表한 것을 비롯하여, 第二次世界大戰當時 戰時經濟統制의 一環으로 企劃院財務諸表 統一協議會가 1941年에 「製造工業統一財務諸表準則草案」을 發表한 것이 그 代表的인 것이다.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은 上述한 바와 같은 戰前의 會計의 統一化運動의 傳統으로 하여 存立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第二次世界大戰에 敗北한 日本이 當時의 經濟의 再建을 目標로 하여 經濟制度의 改革運動을 展開하는 過程에서, 그 一環으로 企業會計制度의 改善統一을 추진하였던 時代의 背景에 起因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은 日本「企業會計原則」의 制定趣旨를 보더라도, 1949年の 「企業會計原則」前文에 『經濟再建

\* 本研究所 研究員, 檀國大 商經大 副教授

1) 當初는 日本經濟安定本部 산하의 企業會計制度對策調查會라는 명칭으로 出發하였지만, 그 후 企業會計基準審議會라 改稱하였다가, 1953年에는 그 所管業務가 大藏省으로 移管됨에 따라 「企業會計審議會」로 명칭을 바꾸고 「企業會計原則」에 대한 審議를 現在에 이르기까지 繼續하고 있는 것이다.

## 産業研究

上當面課題인 外資의導入, 企業의合理化, 課稅의公正化, 證券投資의民主化, 產業金融의適正化등의合理的인解決을위해서도, 企業會計制度의改善統一은緊急을要하는問題이다.』라고하여, 그當時의日本의國內事情이企業會計制度의近代的인體系化를필요로하면時代였음을잘表現해주고있는것이다. 따라서, 稅制의改革, 商法의改正, 證券去來法의制定에의한資本市場의改革, 公認會計士制度의創設과같은一聯의制度改善問題의根底에는會計原則의確立이基本的인前提條件으로서要請되기에이르렀고, 鉗기야는「企業會計原則」이라는하나의船體가形成되었던것이다.

日本「企業會計原則」의生成裏面에는日本占領聯合軍總司令部 산하의經濟科學局 社會統計課에서提示한「Instruction for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 of Manufacturing and Trading Companies」<sup>2)</sup>라는財務諸表의作成指針이存在하고 있음을看過해서는안된다. 이것은, 역시日本經濟의民主化對策은물론이고安定과復興을前提로하여提示된것이다. 그것은當時의政治的,經濟의色彩가짙으게作用한것이라하였으나,敗戰에의하여生產力이顯著하게低下되었고世界市場이崩壊되었던當時日本의經濟事情으로서는外資를導入함으로서企業을再建하고,經濟의自立과安定을위하여直接的으로는證券市場의復活에의한內資動員이라는流通過程으로부터의資本蓄積策으로서占領軍司令部에의하여提示되지않을수없는形편에놓여있음을端的으로말해주고있다. 따라서그것은企業會計의近代的인體系化를期하는일이되었고,制度會計의確立을위한作業이기도하였다.淺羽二郎教授는이「指示書」야말로확실히日本에있어서企業會計의統一化를指向하고있는것이며,戰後日本의會計原則運動의起點으로볼수있다고論述하고있다.<sup>3)</sup>

그러므로第二次世界大戰後美國占領軍의日本에대한占領政策으로인하여나타난政治的,

2) 이는1948年에,日本을占領하고있던聯合軍司令部산하의經濟科學局社會統計課에서提示한指示書로서,『製造會社 및商事會社의財務諸表作成을위한指示書』라고이름한다. 그속에表示되고있는『目的』의一部를紹介하면, 다음과같은內容이다.『第二目的은日本의商工業會計處理를改善標準化하는데필요한基礎를마련함에있다.過去에聯合軍司令部에提出된報告書를보면,會計處理方法은未熟한點이많다.日本의會社는會計記錄에따라調整된各期의試算表에서財務諸表를作成하는데,元帳計定科目의分類法을變更할필요가있다는것을인정하게될것이다.』이것은日語와英語의兩國語로表示되고있는바,理解를돕기위하여英文으로된原文을다음에紹介해두는바이다.

“A Secondary purpose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improving and standardizing Japanese commercial and industrial accounting practices. Statement furnished to SCAP in the past have disclosed deplorable shortcoming in accoun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Japanese business concerns will find it desirable to make necessary changes in their own classification of ledger accounts to enable them to complete the prescribed statements from the periodic trial balances drawn from their accounting records.”(Instruction for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of Manufacturing and Trading Companies).林健二,損益計算論(東京,千倉書房,1950),附論参照,淺羽二郎,會計原則の基礎構造(東京,有斐閣,1959),pp.149~150参照。

3) 淺羽二郎,上掲書,p.150.

## 日本企業會計原則의 體系와 特徵

經濟的 與件의 變化는 새로운段階의 「企業會計原則」制定을 급속히 추진하는 直接的인 結果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즉, 戰後 日本에 있어서 產業再建을 위하여 必要한 美國資本의 導入<sup>4)</sup>, 占領軍司令部에 의한 財閥解體의 結果, 財閥持株會社의 所有株式을 放出함으로써 證券市場이 再建되고 活性화됨에 따라, inflation을 잡을 수 있었음은 물론, 企業이 自己資本을 蓄積하여 資本構成比率을 健全하게 할 수 있는 手段<sup>5)</sup>으로서 會計處理의 指針인 「企業會計原則」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戰後 美國占領軍의 占領政等上 日本經濟의 民主化를 위한 重點的 施策이 하나로서 一般投資家の 保護를 基礎로 하는 健全한 證券去來의 育成을 위해 力한 하나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美國에 있어서의 1933년의 證券法과 1934년의 證券去來法을 基礎로 한 日本의 證券去來法이 1948年 4月에 法律로서 公布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同年 7月에는 公認會計士法이 發足되었고, 證券去來法에 根據를 둔 公認會計士의 監査制度가 確立되었다.<sup>6)</sup> 이러한 事情下에서,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은 當時의 歐美會計學에 대한 日本會計學者들의 研究成果를 理論的인 背景으로 하여 生成되었던 것이다. 즉, 1938年에 美國에서 發表된 「SHM 會計原則」의 內容은 물론이고, 1936年 以後 AAA가 數次에 걸쳐 公表한 會計原則에 관한 意見書, AICPA의 會計原則意見書, 더나아가서는 英國勅許會計士協會의 會計原則勸告書, 프랑스의 「Plan Comptable Générale」 및 獨逸의 貸借對照表諸原則까지도 涉獵한 後, 그것들을範例로 하여 形成된 것이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이라고 黑澤清教授는 說破하고 있다.<sup>7)</sup>換言하면, 當時의 企業會計對策調查會는 內外의公正한 會計慣習과 法制는 물론, 歐美에 있어서의 會計原則의 先例에 관한 調查研究의 成果를 根據로 하여 「企業會計原則」의 形成을 위한 基本的인 「틀」을 構想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日本 「企業會計原則」의 前文에 보면, 『企業會計原則은 企業會計의 實務 속에서 慣習으로 發達한 것 中,一般的으로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것을 要約한 것이다, 반드시 法令에 의하여 強制되지 않더라도, 모든 企業이 그 會計를 處理함에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基準이다.』라고 記述하고 있다. 이는 「企業會計原則」의 公正한 會計慣習의 體系의 表現이라는 點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같은 前文에서 『企業會計原則은 將來에 商法, 稅法, 物價統制令등의 「企業會計에 관한 諸法令」이 制定改廢되는 경우에도 尊重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라고前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法的 強制性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企業會計의範例로서 遵守되어지기를 바라는 內容인 것이다. 그래서 인계, 日本의 경우는 數次에 걸친 商法改正, 稅法改正時에 그의 尊重을 現實的으로 立證하고 있음을 可히 본받을만 하다고 하

4) 岩田巖, 會計原則と監査基準(東京, 中央經濟社, 1955), p. 204

5) 太田哲三, 「證券資本制復歸とその條件」(平井泰太郎 編, 『經營管理と公認會計士』, 東京, 國元書房, 1949), pp. 5~6; 淺羽二郎, 前掲書, pp. 154~159.

6) 黑澤清, 阪本安一, 久保田音二音 二郎, 監修, 會計ハンドブック(東京, 中央經濟社, 1976), p. 118.

7) 神戸大學會計學研究室編, 會計學辭典 第三版(東京, 同文館, 1976), p. 228; 黑澤清, 近代會計學(東京, 春秋社, 1974), pp. 279~285.

겠다.

이와같이, 日本에 있어서의 「企業會計原則」은 戰後, 日本經濟의 構造的 變化에 따라, 企業會計制度의 體系의 變貌를 가져오는 基礎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戰後 日本에 있어서의 企業會計의 思想의 基礎를 이루는 會計制度近代化에 대한 意志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은 戰後 日本의 企業會計制度에 대한 近代化의 起點으로 發足하여, 그 中樞的 役割을 遂行함으로서 日本의 會計制度의 歷史的 發展을 이끌어 온 鑑車的 地位를 確保하고 있는 것이다.

## II. 日本「企業會計原則」의 發展過程

近代的 會計制度가 日本에 最初로 導入되어진 것은 明治六年 즉, 1873년의 일이다. 이 해(年)는 日本의 企業會計制度의 近代化過程에 있어서 決定的으로 重要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日本의 先覺者였던 福澤諭吉에 의하여 1873年 6月에 「帳合之法」이라는 日本最初의 西洋式簿記에 관한 文獻이 出版된 것을 비롯하여, 同年 12月에는 英國人 Alexander Alan Shand에 의한 「銀行簿記精法」이 刊行되어 企業會計制度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日本에서 西洋式 企業會計制度가 定着되고 普遍化되어 會計處理의 行動指針으로서 慣行이나, 日本에서 西洋式 企業會計制度가 上으로서 상당한 세월이 흘러야 했다. 1934年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日本「企業會計原則」의 先驅라고 할 수 있는 「財務諸表準則」이 商工省財務管理委員會에 의하여 作成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41年에 公表된 「製造工業統一財務諸表準則草案」을 거쳐, 1949年에 經濟安定本部의 企業會計制度對策調查會에 의하여 「企業會計原則」이 制定公表되기에 이르렀다.

日本에 있어서 「企業會計原則」의 歷史的인 由來는 간단히 위와 같이 말할 수 있으나, 이를 體系的으로 時代의인 區分을 하여 考察할 수가 있다. 黒澤清敎授는 이에 대하여 ① 財務諸表準則의 成立(會計原則의 萌芽期), ② 企業會計原則의 成立(會計原則의 確立期), ③ 會計原則의 新展開期의 세 가지 區分을 하여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 1. 「財務諸表準則」의 成立

日本에서 「企業會計原則」이 公表된 것은 1949년의 일이다. 그러나, 會計活動에 대한 基本指針으로서 制度의 裝置를 하려고 했던 先驅의인 것은 第一次世界大戰後의 世界的인 產業合理化活動의 영향을 받아서 作成公表한 1934년의 「財務諸表準則」이다. 이것은 企業會計制度를 合理화할 目的으로 設立된 것이며, 當時의 企業會計의 技術의 改善이라고 하는 目標達成이 그 基調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리고, 1941年에 企劃院財務諸表統一協議會는 第二次世界大戰中에 戰時體

8) 神戶大學會計學研究室 編, 前揭書, pp. 931~932.

## 日本企業會計原則의 體系와 特徵

制를 確立하기 위한 一環으로 「製造工業 統一財務諸表準則草案」을 公表하였다. 이를 準則이 後 日本의 「企業會計原則」形成에 미친 影響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던 것이다. 黑澤清教授는 이에 대하여, 『會計原則의 先驅的 業績으로서 1934年에 財務管理委員會가 作成한 「財務諸表準則」이』 存在하였다. 1949年에 經濟安定本部에서 「企業會計原則」을 公表했을 때에도, 「財務諸表準則」을 改訂하고, 새롭히 「財務諸表準則」과는 不可分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의 「企業會計原則」이 設定된 것이다.<sup>9)</sup>라고 하여 그相互關聯性을 強하고 있다.

그러나, 「財務諸表準則」은 企業會計에 관한 社會的 規範을 設定하기 위하여 必要한 會計制度觀이 缺乏되고 있었음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1949年の 「企業會計原則」의 前文에 揭示되고 있는 바와 같이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會計原則이라는 認識과, 그것을 社會의 으로 維持하기 위한 制度의 基盤을 樹立하는 것이 아니라면, 「財務諸表準則」은 社會의 으로 妥當性있는 會計의 行動規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1934年の 「財務諸表準則」은 日本에 있어서 「企業會計原則」의 成立을 위한 萌芽時代의 先驅의인 試圖가 行해진 것으로서 發展史의인 側面에서는 높이 評價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會計處理에 대한 行動規範으로서는 지극히 未熟한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sup>10)</sup>

## 2. 「企業會計原則」의 生成과 發展

1949年 7月, 日本 經濟安定本部의 企業會計對策調查會가 公表한 「企業會計原則」은 上述한 바와 같은 過去의 諸經驗과 여러가지 會計原則들을 參考하여 設定된 것으로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慣行들을 體系의으로 表示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元來, 會計行爲의 基本指針이 되는 것으로서의 會計原則은 그것을 社會의 으로 維持發展시키기 위한 制度의 基盤을 갖고 있지 않으면 實効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企業會計原則」은 公表와 동시에 證券去來法에 根據를 둔 公認會計士의 監查制度가 確立되었고, 會計原則에 대한 客觀的인 普遍妥當性이 社會의 으로 認識되기에 이르렀음은 물론, 從來와 같은 단순한 會計技術의 改善이라는 思考領域을 벗어나, 企業會計에 관한 새로운 理念의 展開와 會計시스템의 開發을 可能하게 하였다.<sup>11)</sup> 따라서, 「企業會計原則」은 1949年부터 1982年에 이르기까지 33年間 多次에나 改正作業이 있었다. 첫번째는, 1954年的 一部修正이었고, 두번째는 1963年에 있었으며, 세번째의 改正是 1974年에 行해졌다. 그리고, 1982年 4月 20日附로 네번째의 改正이 있었다.

「企業會計原則」이 1949年에 最初로 公表되던 時當時에는 商法의 大幅의인 改正作業이 進行中이었고, 아직 公認會計士에 의한 監查制度마저 未備된 狀態에서 企業會計의 制度의인 內容이 定

9) 黑澤清, 「企業會計原則のあり方」(日本會計學會編, 『會計』, 第119卷 第6號, 森山書店, 1981), p. 167.

10) 神戶大學會計學研究室 編, 前揭書, p. 931.

11) 神戶大學會計學研究室 編, 上揭書, p. 931.

## 產業研究

着되지 못한 때였다. 그러나 「企業會計原則」은 商法의 計算規定이나 稅法의 所得計算規定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점차 企業會計의 實務에 대해서도 指導原理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補強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sup>12)</sup> 1951年 9月에 「商法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 그리고 1952年 6月에는 「稅法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가 각각 公表되고, 「企業會計原則」의 趣旨도 詳細히 說明되었지만, 「企業會計原則」 그 自體에 대한 定義라든가, 註解的 解釋은 그렇게 充分하지 않았다. 이러한 事情下에서 「企業會計原則」의 修正은 不可避한 것이 되었다. 1954年 7月의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準則」의 部分的인 修正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의 修正은 1949年 以後, 商法과 稅法의 改正으로 「企業會計原則」의 趣旨가 反映된 面이 있기는 했으나, 逆으로 「企業會計原則」이나 「財務諸表準則」 쪽에서 약간 修正을 필요로 하는 部분이 생긴 것을 機會로 하여 用語의 統一을 기하고 字句의 修正을 함과 동시에, 18個項目에 걸친 「企業會計原則註解」를 함께 發表한 것이다.

1963年에 두번째로 「企業會計原則」이 改正된 것은 1962年的 商法計算規定의 改正과 1963年 日本法務省令인 「株式會社의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에 관한 規則」의 施行으로 생긴 不一致點을 調整하는 作業이라고 할 수 있다. 1963年에 公表된 改正商法의 計算規定은 大幅의으로 「企業會計原則」의 內容을 받아들여서 改正된 것이었다고는 해도 一部의 不一致된 點은 남아 있었다. 이러한 不一致點, 즉 用語의 相違라든가, 科目分類의 差異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企業會計原則」 쪽을 改正해야 한다고 하는 要求가 商法側에서 提起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要求條件을 받아들여서 改正된 것이 1963年の 두번째 改正作業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留意해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은 「財務諸表準則」이 改正되지 않았다는 點이다. 이 때까지의 「財務諸表準則」은 「企業會計原則」과 表裏一體의 關係를 갖는 것으로서, 동시에 公表되고 修正되어 왔으며, 大藏省令인 「財務諸表등의 用語, 樣式 및 作成方法에 관한 規則」의 基盤이 되고 있었으나, 1963年의 修正時には 「財務諸表準則」의 修正은 保留되었다는 것이다. 그 後로는 이것이 改正되지 않고 死文化되어 있는 狀態이다.

1969年에 이르러 商法과 「企業會計原則」과를 調整하고, 商法監查와 證券去來法監查와의 一元化를 圖謀하기 위하여 다시금 「企業會計原則」의 改正을 檢討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同年 12月 16日에 「企業會計原則修正案」을 公表하였다. 同修正案은 1962年 以來의 商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對立되는 點을 調整하여 一元화하려고, 지금까지의 「企業會計原則」의 主張을 약간 양보하여 商法側의 主張을 받아들이고 있는 部분이 많았으므로 會計學者들로부터 많은 批判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涼中에 第三次 「企業會計原則」의 改正을 보게 되었다.

第三次의 改正作業은 1974年的 商法改正에 照應하는 것이었다. 즉, 日本의 新商法은 株式會

12) 神戶大學會計學研究室 編, 上揭書, p. 931.

## 日本 企業會計原則의 體系와 特徵

社監査制度의 根本的인 改正을 目標로 한 것이었는 바, 商法에 대한 特例法을 新設하고 資本金 五億圓以上의 大會社에 대해서는 會計監査人에 의한 監査制度를 新設하였다. 會計監査人은 公認會計士中에서 選任되며, 그에 의하여 大會社의 會計監査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監査는 證券去來法上의 監査로서 有効性이 認定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商法上의 計算規定과 證券去來法上의 會計基準인 「企業會計原則」이 合致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要求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企業會計原則」을 改正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改正된 것이 1974年의 새로운 「企業會計原則」인 것이다. 더우기 改正된 「企業會計原則」은 形式上 別途로 公表되어진 1975年의 「聯結財務諸表原則」의 基礎로서 存在한다는 것을 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1973年부터 日本은 會計原則의 國際的인 統一化運動에 參加하여 經濟國際化時代에 對備하고 있는 此際, 새로운 時代에 대응하는 「企業會計原則」으로서의 役割을 다할 수 있도록 力盡하고 있는 것이다. 즉, 1974年 以後는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의 發展을 위한 新展開期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82年 4月 20日附로 「企業會計原則」은 다시 改正되었다. 改正된 要點을 보면, 負債性充當金을 단순한 充當金으로 統合하여 使用되도록 修正하였으며, 重要한 會計方針 및 後發事象의 公示와 一株當 當期純利益 및 一株當純資產額을 公示하도록 하는 등, 몇 가지 點에 걸친 修正이 行해졌던 것이다. 특히, 充當金의 表示에 대한 修正은 注意해야 할 것으로 判断된다.

### 3. 「企業會計原則」과 諸意見書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은 그 内容이 簡單明瞭하고 重點的인 것으로 되어있다. 「企業會計原則注解」에 의하여 약간의 補完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原則의 趣旨, 論據등이 만족할 만큼 論述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새로운 問題點이 나타나 原則을 明白히 바로 잡으려 할 경우에, 그 때마다 「企業會計原則」을 改正한다는 것이 너무 번거러울고, 때로는 提言이나 勸告를 目的으로 하는 内容을 原則속에 包含시키는 것도 無理<sup>13)</sup>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겠다. 이러한 理由로 因하여, 日本의 企業會計審議會는 자주 「企業會計原則」과는 別個로 「意見書」를 公表해 왔던 것이다. 그 「意見書」들을 大別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商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
- (2) 稅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
- (3) 「企業會計原則」과 關係法令과의 調整에 관한 連續意見書.
- (4) 個別問題에 관한 意見書

13) 黒澤清, 阪本安一, 久保田音二 郎 監修, 前揭書, p.121.

## (5) 聯結財務諸表에 관한 意見書

## (6) 原價計算基準

最初의 「商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는 1951年 9月 28일에 公表되었으며, 14個의 項目에 이르는 提案과 그 理由를 記述하고 있다. 그 中에서 많은 部分이 商法改正을 하는 過程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sup>14)</sup>

「稅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는 1952年과 1966年 두 차례에 걸쳐 公表된 것이다. 다음에 「會計原則과 關係法令과의 調整에 관한 連續意見書」가 1960年 6月과 1962年 8月에 第1에서 第5까지 公表되었다. 이를 連續意見書는, ①「財務諸表의 體系에 대하여」, ②「財務諸表의 様式에 대하여」, ③「有形固定資產의 減價償却에 대하여」, ④「在庫資產評價에 대하여」, ⑤「移延資產에 대하여」, 의 다섯 가지 問題를 다루고 있다. 이 連續意見書의 目的是 商法 혹은 稅法을 「企業會計原則」과 調整한 다음의 問題點을 指摘하고 要望事項을 表明하고 있는 바.前述한 商法 및 稅法과의 調整意見書에서는 充분히 다루지 않았던 點에 대해서 까지도 詳細하게 記述하고 있는데 特色이 있는 것이다.

1965年 3月에 있었던 山陽特殊鋼事件을 하나의 契機로 하여 1967年 5月에 「聯結財務諸表에 관한 意見書」와 「同註解」가 公表되었으며, 1975年 6月 24日附로 「聯結財務諸表의 制度化에 관한 意見書」가 公表되었다. 同意見書의 中心內容은 「聯結財務諸表原則」과 「聯結財務諸表原則註解」로 이루어져 있다. 더우기, 1977年 3月 29日附로 「半期報告書에서 開始해야 할 中間財務財諸表에 관한 意見書」가 公表되었고, 이어서 1980年 6月에는 「인플레이션會計에 관한 意見書」가 公表되면서 인플레이션會計의 制度에 한걸음 다가선 셈이 된다. 이를 意見書를 보면, 「企業會計原則」에서 다루지 않은 問題가 意見書의 形式으로 取扱하고 있으며, 「企業會計原則」을 補充하는 것으로서의 典型적인 範例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企業會計原則」의 一環으로서 取扱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企業會計原則」의 内容이나, 그 發展史를 研究하는 경우에는 上記한 諸意見書의 檢討가 充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III. 日本「企業會計原則」의 體系的 展開

## 1. 總 說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은, 上述한 바와 같이 1949年에 公表된 以來, 四回에 걸쳐 改正作業이 行해지고 現在에 이르고 있는 바, 그것은 다음과 같은 三部分으로 體系化되어 있다.

14) 黒澤清, 阪本安一, 久保田音二郎 監修, 上掲書, p. 121.

## (1) 一般原則

## (2) 損益計算書原則

## (3) 貸借對照表原則

따라서, 이와 같은 體系를 갖추게 된 데 대하여當時의 制定作業에 參與하였던 黑澤清教授는 다음과 같이 그 理由를 說明하고 있다. 『企業會計原則은 企業이 投資家, 株主, 債權者 및 其他의 利害關係者에 대하여, 會計情報を 傳達하려고 作成하는 財務諸表의 基礎가 되는 基本原則이므로,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라고 불리우는 財務諸表를 對象으로 하여 會計處理의 基準을 系統적으로 列舉하는 方針을 取한 것이 上記한 「企業會計原則」의 體系를 形成하게 된 理由이다.』<sup>15)</sup>

이와 같은 體系는 얼른 보기에도, 1938년에 發表된 美國의 「SHM會計原則」과 類似한 形態를 取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의 制定時에 그것을 參照한 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결코 그것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主張이 있다. 『企業會計原則은 결코 「SHM會計原則」에만 準據하여 構成된 것이 아니고 AAA會計原則의 長點을 充分히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우선 日本의 經濟的, 制度的 環境이 考察된 位置에서 作成된 것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sup>16)</sup> 山下勝治教授도, 『企業會計原則은 企業會計의 實務를 母體로 하여, 會計實務中에서 慣習으로 認定된 것을 抽象化한다고 하는 方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이 會計原則은 동시에 日本의 會計實務를 改善한다고 하는 目標로 組立된 것이기 때문에, 그 母體가 되는 會計實務는, 英國과 美國 특히 美國의 實務를 널리 導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點에서 從來 日本의 會計實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原則이 導入되었다.』<sup>17)</sup>라고 하여 過去의 日本의 諸經驗의 土臺위에, 諸外國의 先例를 參考로 한 後, 「企業會計原則」을 設定하여 體系화한 것임을 說破하고 있다.

「企業會計原則」은 四次에 걸쳐 改正作業이 이루어졌으나, 一般原則, 損益計算書原則, 貸借對照表原則으로 形成體系에는 아무런 變更을 加하지 않은 狀態에서 그대로 維持되고 있음은 注意를喚起시킨다. 더우기, 1975年 6月에 企業會計審議會에 의하여 公表된 「聯結財務諸表의 制度化에 관한 意見書」에서의 「聯結財務諸表原則」은 「企業會計原則」의 延長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역시 「企業會計原則」의 内部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겠으나, 實際로 이것을 實施하기 위한 行政上의 諸多의 問題에 別途로 獨立된 形態의 原則으로 表明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서, 1977年的 中間財務諸表의 作成原則도 企業會計審議會의 意見書形式으로 表明되어 있어, 日本 「企業會計原則」의 體系는 基本的原則과 補足的原則으로 構成되어 一體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15) 神戶大學 會計學研究室 編, 前揭書, p. 228; 黑澤清, 近代會計學(東京, 春秋社, 1974), p. 283.

16) 黑澤清, 上揭書, p. 285.

17) 山下勝治, 企業會計原則の理論, (東京, 森山書店, 1965), p. 33.

## 2. 一般原則의 構造와 意義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에 設定되어 있는 一般原則은『損益計算書나 貸借對照表에 관한 基本的인 會計原則 혹은 이것을 實踐에 옮기기 위한 具體的인 諸節次의 選擇과 實施에 관한 各種의 會計諸基準을 全體로서 包括하는 一般性의 것 中에서 摘出』<sup>18)</sup>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日本에서는 學者에 따라 一般原則에 대한 解釋의 見解差異가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첫째는, 一般原則이 企業會計의 中核을 이루는 損益計算書原則과 貸借對照表原則에 共通되는 原則으로서의 意味를 지닌다는 見解이다. 이것은 山下教授의 다음과 같은 所說에 잘 反映되고 있다. 『一般原則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會計原則 全體를 一貫하는 基本的인 原則 혹은一般的 原則이라고理解되지 않은 바는 아니나, 여기서 말하는 一般原則은 이러한 基本的原理가 아니고, 오히려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에 共通的으로 作用하는 原則을 抽出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타당하며, 말하자면 平面的인 原則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sup>19)</sup> 이렇게 말하면서, 山下教授는 一般原則을『形式規律的 原則의 色彩가 強하다.』<sup>20)</sup>고 하는 見解를 取하고 있음은 물론, 一般原則과 財務諸表에 관한 原則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前者가 後者를 規律하는 關係로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企業會計原則」의 一般原則이 갖는 性格을 다른 次元에서, 즉 會計處理의 原則과 會計報告의 原則에 聯關된 共通의 原則으로 說明하려고 하는 見解가 있다. 즉, 一般原則과 損益計算書原則 및 貸借對照表原則의 體系的 構造를 取하게 된 理由를 說明하는 과정에서, 一般原則은『報告의 原則과 會計處理의 原則을 有機的인 一體』<sup>21)</sup>로서 結合해야 하는 媒介環이라고 하는 位置에 있다는 점이다. 黑澤清教授는『一般原則이 一般原則다운 理由는, 그것이 狹義의 會計處理의 原則만으로 이루어진 點에 있는 것이 아니라, 狹義의 會計處理와 會計報告와의 兩者에 共通되는 原則이라는 點에 있다.』<sup>22)</sup>고 하여 그의 見解를 더욱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一般原則이 會計處理의 原則과 報告의 原則과의 有機的인 結合體로서의 媒介環이라는 地位에서 보았을 때, 과연 一般原則 그 자체가 갖는 論理構造는 무엇이며, 一般原則과 財務諸表原則과의 關係는 어떻게 規定지을 수 있느냐는 問題가 提起될 수 있다. 番場教授는 上述한 두 가지의 所說로서는 一般原則의 性格에 대한 妥當性있는 說明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理論을 提示하고 있다.<sup>23)</sup>『一般原則은 이를 會計原則이 上位에 놓여 있는 原則이며,

18) 黑澤清, 阪本安一, 久保田音二郎 監修, 前揭書, p. 124.

19) 山下勝治, 前揭書, p. 13.

20) 上揭書, p. 14.

21) 黑澤清外七人, 企業會計の一般原則詳説, p. 19; 黑澤清, 前掲書, p. 284.

22) 黑澤清, 上掲書, p. 285.

23) 番場嘉一郎, 詳説企業會計原則(東京, 森山書店, 1976), p. 11.

## 日本企業會計原則의體系와特徵

會計情報가 갖는屬性, 會計情報의目的내지役割, 會計情報의利用者에의한情報利用의方法, 會計情報가產出되는메카니즘, 情報利用者에의하여필요한情報量등을고려함으로서導出된企業會計(會計處理, 會計記錄, 會計報告)에대한要請, 規範的인理念내지制約이라고하는性格을갖는基本的인命題라고보지않으면안된다.』라고. 이와같은見解에따른다면, 一般原則은英語로accounting doctrine의意味를지니는것으로解釋된다. 즉, 會計의要請의次元에서다루어지는命題라고할수가있다. 그런데筆者は上記諸說中어느것이妥當性있는가를밝히려는데目的을두고있지않으며, 다만日本의「企業會計原則」에設定되어있는一般原則에대한日本學者들의見解를소개하려는데불과하므로, 그意義糾明에대한것은省略하려고한다.

日本「企業會計原則」에있어서의一般原則의構成은, ①眞實性의原則, ②正規簿記의原則, ③繼續性의原則, ④剩餘金區分의原則, ⑤明瞭性의原則, ⑥保守主義의原則, ⑦單一性的原則의七個項으로形成되어있다. 이를一般原則은그自體別로具體的인內容을갖고있지않으며, 會計行動을指導하고方向을設定하여그것을制約하는데本來의機能이있는것이다. 따라서, 이러한會計行動을文法에있어서의動詞에비유한다면, 一般原則은그것을修飾하는副詞와같은作用을한다고볼수있다. 즉, 副詞는動詞를修飾하여文章을한층明瞭하게描寫하며, 表現의方向을定하고制約하는作用을하는것처럼, 企業會計의一般原則도이와똑같은機能을갖고있는것으로思料된다.

### 3. 損益計算書原則의體系

#### (1) 損益計算書의本質과 그構成

日本「企業會計原則」의損益計算書原則의序頭에는損益計算書의本質에대해서다음과같이記述되고있다. 「損益計算書는企業의經營成績을明白히하기위하여一會計期間에속하는모든收益과이에對應하는모든費用을記載하여經常利益을表示하고이에特別損益에속하는項目을加減하여當期純利益을表示하지않으면안된다.」라고.

「企業會計原則」은1949年制定當時에는當期業績主義에의한損益計算書의形式을採用하고있었다. 원래,當期業績主義는AICPA에서主張<sup>24)</sup>하였던것이고, 1938年の「SHM會計原則」에서도採擇되었던것이다. 이러한美國의영향을받아서制定되었기때문에, 그形式이導入되었다고볼수있다. 이形式은1958年の韓國「企業會計原則」에서도採擇된것이었다. 1974년日本「企業會計原則」이改正되면서, 이를버리고包括主義의損益計算書의形式을取하게된것이다. 이것은當時美國會計界的狀況에영향을받은것으로思料된다. 즉,當期業績主義를支

24) AIA,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1, p.63; AIA, Accounting Research Bulletin No.43, ch. 8, par. 11

## 產業研究

持하던 AICPA가, AAA와 SEC의 包括主義에 대한 支持와 계속적인 壓力에 따라, 1966年에 APB意見書 第9號<sup>25)</sup>에서 包括主義의 形式을 採擇함으로서, 包括主義의 一般化 傾向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判斷되는 바이다. 韓國의 경우도 1976年에 「企業會計原則」이 改正될 때, 包括主義를 採擇한 것은 이러한 趨勢에 起因되었다고 할 것이다. 後우기 日本의 경우는 損益計算書의 形式을 商法의 計算書類規則의 그것에 合致시키려고 하는데서 起因되었다고 함도 看過할 수 없는 하나의 理由이다.<sup>26)</sup>

다음에 損益計算書의 構成內容을 보면 그것은 ① 營業損益計算區分, ② 經常損益計算區分, 및 ③ 純損益計算區分의 形態로 되어 있다. 營業損益計算은 企業의 營業活動에서 생긴 收益과 費用을 記載하여 營業損益을 計算하는 區分이다. 즉, 純賣出額에서 賣出原價를 控除하여 賣出總利益을 求한 다음에, 營業費用에 속하는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를 控除함으로서 營業利益을 算定케 하는 方式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賣出損益計算區分과 營業損益計算區分을 統合한 概念으로 表現된 것이다.

그 다음은 營業損益計算의 結果를 이어 받아서 利子 및 割引料, 有價證券賣出損益등 營業外 收益과 營業外費用에 속하는 것들을 加減하여 經常利益을 算定한다. 이 計算過程이 經常損益計算區分이다. 이 區分에서 算定되는 經常利益은 소위 當期業績主義에 의한 利益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經常損益計算의 結果를 이어 받아서, 前期損益修正額, 固定資產賣却損益등의 特別損益을 加減하여 當期純損益을 計算하는 것이 純損益計算區分이다. 여기서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前期損益項目의 表示問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것을 期初利益剩餘金의 修正項目으로 利益剩餘金計算書에 記載하도록 되어 있는데 對하여, 日本의 경우는 純損益計算區分에서 加減하도록 하고 있다. 韓國의 경우는 美國의 APB意見書 第9號 및 第30號에 영향을 받은 듯 思料되지만<sup>27)</sup>, 日本의 그것은 그 論理的 根據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즉, APB意見書 第9號에서는 前期損益修正項目을 除外한 모든項目은 損益計算書의 利益決定에 包含시켜야 한다는 包括主義方式을 要求하고, 前期損益修正項目은 利益剩餘金計算書의 期初利益剩餘金加減項目으로 記載하도록 하고 있으며, APB意見書 第30號에서는 特別項目의 定義와 區別基準도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에 있어서의 損益計算書의 純損益計算區分은 약간 복잡한 節次를 지니고 있다. 즉 經常利益에 前期損益修正損益, 固定資產賣却損益등의 特別損益을 加減하여 法人稅差減前利益이 算定된다. 여기서 當期負擔에 속하는 法人稅, 住民稅등을 差減하여 當期純利益이 算出되는데,

25) AICPA, "Reporting the Results of Operations,"(AICPA, APB Opinion No. 9, 1966), Par. 17.

26) 黒澤清, 阪本安一, 久保田音二郎 監修, 前揭書, p. 132.

27) AICPA, APB Opinion No. 9; AICPA, Reporting the Results of Operations (AICPA, APB Opinion No. 30, 1973), par. 20.

## 日本 企業會計原則의 體系와 特徵

〈表 1〉：日本型損益計算書의 例示

自 昭和×年 4月 1日

至 昭和×年 3月 31日

(單位 : 100萬円)

營業 損益 計算 의 區 分	賣出高	40,485
	賣出原價 :	
	期初製品在庫額	25,210
	當期製品製造原價	30,173
	計	55,383
	期末製品在庫額	(-)28,530
		26,853
	在庫資產評價損	212
	賣出總利益	(-)27,065
		13,420
經營 損益 計算 의 區 分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販賣員給料手當	567
	販賣員旅費	180
	廣告宣傳費	540
	販賣手數料	370
	.....	.....
	.....	.....
	任員給與	36
	事務員給料手當	410
	退職給與	75
經營 損益 計算 의 區 分	減價償却費	320
	.....	.....
	.....	.....
	.....	.....
	.....	.....
	營業利益	(-) 6,120
	營業外收益	7,300
	受取利息	745
	受取配當金	308
	其    他	173
經營 損益 計算 의 區 分	營業外費用	1,226
	支拂利息 및 割引料	1,820
	社債利息	231
	.....	.....
	.....	.....
	其    他	260
	經營利益	(-) 2,744
	特別利益	5,782
	固定資產賣却益	422
	前期損益修正益	85
純 損 益 計算 의 區 分	特別損失	507
	災害損失	370
	前期損益修正損	128
	稅差減前當期純利益	(-) 498
		5,791

## 產業研究

特定充當金還入額		20
特別償却準備金還入額		
特定充當金轉入額		
海外市場開拓準備金轉入額	54	
價格變動準備金轉入額	23	
工場再配置充當金轉入額	1,000	
創業記念事業充當金轉入額	12	
稅差減稅前當期利益		(- ) 1,089
法人稅等負擔額		
當期利益		4,722
前期移越利益	1,245	
中間配當積立金還入額	270	
計	1,515	
中間配當額	(- ) 800	
利益準備金積立額	(- ) 80	
當期末處分利益		635
		2,827

〈資料：番場嘉一郎，詳說企業會計原則，1976，p.78〉

法人稅등의 更正決定으로 인한 追徵稅額 및 還給稅額이 있으면, 이것은 法人稅差減前當期純利益에 加減하여 表示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에 의하면, 損益計算書는 當期純利益 혹은 當期利益이 算定表로 일단 끝나게 되지만, 이것을 이어받아서 當期末處分利益의 計算表示가 行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特異하다. 즉, 損益計算書의 끝에 當期純利益에 前期移越利益 및 一定한 目的을 위 하여 設定된 積立金이 그目的에 따른 處分額, 中間配當額, 中間配當에 따른 利益準備金의 積立額등을 加減하여 當期末處分利益이 表示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特徵있는 形態라고 思料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損益計算書의 基本樣式를 參考로 〈表-1〉에 例示해 둔다.

### (2) 損益計算書에 관한 諸原則

損益計算은 企業이 經營活動을 遂行하면서 發生하는 一會計期間의 收益과 이에 對應하는 費用과를 그 源泉別로 捕足하고 兩者の 差額으로서 期間純利益을 決定하는 것이다. 企業은 去來活動을 會計帳簿에 記錄하고, 이것을 基礎로 하여 決算을 行한다. 企業의 收益 및 費用에 대한 發理事項을 明白히 하고, 當期利益을 計算하기 위한 會計處理活動과 그 結果를 損益計算書에 의하여 總括表示하려고 마련된 基準이 있으니, 이것이 損益計算書의 作成原則이라고 하는 것이다.

損益計算書의 原則은 損益計算書를 作成하는데 菲요한 諸方法을 規定한 原則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企業會計의 過程中에서 核心을 이루는 중요한 原則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① 發生主義의 原則, ② 實現主義의 原則, ③ 費用收益의 期間的 對應原則, ④ 總額主義의 原則, ⑤

區分計算의原則등이이에屬하는것으로規定되어있다.

#### 4. 貸借對照表原則의體系

##### (1) 貸借對照表의本質과構成

日本「企業會計原則」에의하면,貸借對照表의本質에관한規定을設定하고있다. 「貸借對照表는企業의財務狀態를明白히하기위하여,貸借對照表에있어서의모든資產,負債및資本을記載하여,株主,債權者,其他의利害關係者에게이것을정당하게表示하는것이라야한다.」는規定內容이그것이다(日本「企業會計原則」의貸借對照表原則의一).

同原則에서는이와같은性格을가진貸借對照表에관하여,① 그表示에관한基本原則,②區分,③配列,④科目分類,⑤資產評價의五個部分으로나누어詳細하게規定하고있다.

貸借對照表는上記한바와같이「企業의財政狀態를明白히하기위한것」이라는會計思想에입각하여取해진것이기때문에,그目的을達成하기위하여同原則一의A에서「資產,負債및資本은適當한區分,配列,分類및評價의基準에따라記載하지않으면안된다」고規定하고있다. 이規定을土臺로하여,貸借對照表의作成을위한basic principle으로서,①總額主義原則②註記原則,③區分表示의原則,④特定費用의移延,⑤流動性配列의原則,⑥貸借平均,⑦貸借對照表科目分類의原則등이規定되어있는것이다.

日本의「企業會計原則」은貸借對照表原則에서이와같은多岐한諸規定을設定하고있는바,이것을全體적으로整理한다면,크게貸借對照表公正表示의原則과貸借對照表評價의原則으로나누어概觀할수있을것이다.

##### (2) 貸借對照表公正表示의原則

###### ① 總額主義의原則

貸借對照表原則一의B에서는,「資產,負債및資本은總額에의하여記載하는것을原則으로하여,資產項目과負債및資本項目과相殺함으로서그全部또는一部를貸借對照表에서除去해서는안된다」고規定되어있다. 이規定은總額主義의原則이라고불리워지며,貸借對照表의表示에대한明瞭性의原則의具體의in適用例라할수있다. 이것은損益計算書原則一의B에規定되고있는것과對應되는內容이다. 우리나라의경우도貸借對照表基準과損益計算書基準에이와똑같은規定을두고있다.<sup>28)</sup>

###### ② 貸借對照表의註記原則

貸借對照表原則一의C에는,「資產評價의基準,固定資產의減價償却方法,받을어음의割引

28) 韓國「企業會計基準」(1981.12.23), 第11條第2項 및 第65條第3項의規定.

## 產 業 研 究

額 또는 背書讓渡額, 保證債務등의 偶發債務, 및 債務의 擔保에 供하고 있는 資產등, 企業의 財政狀態를 判斷하기 위하여 重要한 事項은 貸借對照表에 註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規定을 두고 있다. 이것은 株主, 債權者, 其他의 利害關係者가 企業의 財務狀態를 을바르게 理解하는데 補足의으로 필요한 事項이 있으면, 註記의 方法에 의하여 이를 開示하도록 要求한 것이다. 결국, 이들 註記事項은 株主등이 貸借對照表를 利用하여 各種의 意思決定을 行하는 경우에 貸借對照表의 本文에 記載되고 있는 事項을 理解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本文에는 記載되어 있지 않으나 參考로 提供해야 될 事項을 바로 알 수 있도록 補充하는 機能을 갖는 内容이다. 따라서 貸借對照表의 註記는 財務報告를 함에 있어서 明瞭性의 原則에 準據하여 會計情報開示의 補助的手段으로서 意義를 갖고 있는 것이다.<sup>29)</sup> IAS 第1號가 會計情報의 開示를 위한 註記事項을 一般事項, 資產에 관한 事項, 負債 및 充當金에 관한 事項, 그리고 損益에 관한 事項으로 나누어 例示하고 있는 것은 注意깊게 觀察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sup>30)</sup>

### ③ 貸借對照表의 區分

貸借對照表原則의 二에서는, 「貸借對照表는 資產의 部, 負債의 部 및 資本의 部의 三面分으로 나누고, 특히 資產의 部를 流動資產, 固定資產 및 移延資產으로, 負債의 部를 流動負債 및 固定負債로 區分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貸借對照表의 區分과 表示에 의한 標準樣式를 例示하면 다음에 보이는 〈表 2〉와 같다.

### ④ 資產 및 負債의 項目配列

貸借對照表原則의 三은 配列原則에 대하여, 「資產 및 負債項目의 配列은 原則의으로 流動性配列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하는 規定을 두어, 流動性配列의 原則을 顯正하고 있다. 그러나, 이 規定을 보면, 「原則의으로」라는 語句가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固定性配列法이 採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貸借對照表를 이용하여 企業의 財務流動性을 觀察하는 경우에는 流動性配列法이 적당하고 더구나 財務諸表分析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財務流動性의 觀察이 重視되기 때문에,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은 流動性配列法을 原則의인 方法으로 採擇하고 있다고 料된다. 그러나, 資本의 大部分이 固定資產에 投下되어 있는 重工業, 鐵山業 및 鐵道業등의 業種에서는 固定資產이 重視되므로, 固定性配列法이 妥當하다고 하여, 英美와 獨逸과 같은 나라에서처럼, 業種에 따라 固定性配列法도 採用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sup>31)</sup>

### ⑤ 貸借對照表 科目分類의 原則

貸借對照表原則의 四에는, 「資產, 負債 및 資本의 各科目은 一定한 基準에 따라 明瞭하게 分

29) 黒澤清, 阪本安一, 久保田音二郎 監修, 前揭書, p. 147.

30) IASC,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y (IAS No. 1, 1973).

31) 番場嘉一郎, 前揭書, p. 140.

## 日本企業會計原則의體系와特徵

〈表2〉：日本型貸借對照表의例示

昭和X年3月31日現在

(單位：100萬円)

資產之部		負債 및 資本之部	
<b>I. 流動資產</b>		<b>I. 流動負債</b>	
現金預金	15,120	支給여금	9,286
受取未入金	8,102	外上買入金	10,757
外上賣出金	25,354	短期借入金	25,435
有價證券	10,315	未支給金	1,254
製品・半製品	32,342	未支給費用	2,582
原材料	4,130	賞與充當金	2,842
先給費用	540	法人稅等未給金	2,530
其他	288	其他	972
貸損充當金	(-) 530	流動負債合計	55,658
流動資產合計	<u>95,661</u>		
<b>II. 固定資產</b>		<b>II. 固定負債</b>	
1. 有形固定資產		社債	5,822
建物	16,172	長期借入金	23,681
機械装置	12,349	退職給與充當金	3,110
車輛運搬具	250	特別修繕充當金	585
工具器具備品	10,334	其他	183
減價償却充當金	(-) 18,423	固定負債合計	33,381
土地	2,152		
建設假定	1,420		
有形固定資產合計	<u>24,254</u>		
2. 無形固定資產			
特許權	200		
營業權	225		
其他	12		
無形固定資產合計	<u>437</u>		
3. 投資及其他資產			
子會社株式	5,254	I. 資本金	23,000
長期貸與金	4,450	II. 資本準備金	1,842
長期先給費用	215	III. 利益準備金	1,567
其他	124	IV. 其他의剩餘金	
投資其他의資產合計	10,043	1. 其他의資本剩餘金	
固定資產合計	<u>34,734</u>	土地受贈益積立金	120
<b>III. 移延資產</b>		2. 任意積立金	
研究開發費	542	減債積立金	3,500
社債發行差金	45	中間配當積立金	838
社債發行費	28	任意積立金合計	4,338
移延資產合計	<u>615</u>	3. 嘗期末處分利益	2,827
資產合計	<u>131,010</u>	其他의剩餘金合計	7,285
		資本合計	33,694
		負債資本合計	<u>131,010</u>

〈資料：番場嘉一郎，詳說企業會計原則，1976，p.132〉

## 產業研究

類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規定이 있는 바, 이것이 科目分類의 原則이라는 것이다.

원래, 貸借對照表는 總計定元帳에 있어서의 資產, 負債 및 資本計定의 期末殘額을 基礎로 하여 決算整理節次에서 얻어진 資料들을 集合시켜 作成하는 것이다. 그러나, 各計定의 殘額을 그대로 集合한 것이 아니라, 貸借對照表에 의하여 企業의 財務狀態의 全貌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金額의 重要性을 考慮하여 各計定의 殘額을 적당히 分類 혹은 合併하므로서, 貸借對照表의 科目이 定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科目이 일단 分類 設定되면, 그것을 每期 繼續해서 適用하고 적당한 理由가 없는限, 科目的 名稱이나 그 內容을 함부로 變更해서는 안된다 는 것도 아울러 含有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貸借對照表에 計上되는 科目分類를 試圖하는 경우에, 一般原則에 있어서의 明瞭性의 原則, 重要性의 原則, 그리고 繼續性의 原則에 비추어 決定하지 않으면 안되는 所以가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 (3) 資產評價의 原則

#### ① 費用配分의 原則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은 貸借對照表 原則 五에서 費用配分의 原則에 관한 規定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資產의 取得原價는 資產의 種類에 相應한 費用配分의 原則에 의하여 各事業年度에 配分하지 않으면 안된다. 有形固定資產은 當該資產의 耐用期間에 걸쳐 定額法, 定率法등의 일정한 減價償却方法에 의하여 그 取得原價를 各事業年度에 配分하고, 無形固定資產은 當該資產의 有効期間에 걸쳐서 일정한 減價償却方法에 의하여 그 取得原價를 各事業年度에 配分하지 않으면 안된다. 移延資產에 대해서도 이에 準하여 各事業年度에 均等額 以上을 配分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은 資產評價의 基本原則을 取得原價主義에 의하고 있으며, 이것을 費用配分의 原則과 有機的으로 結合시켜 合理的인 會計處理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費用配分의 原則은 資產의 取得原價를 當期와 次期以後의 費用으로 區別하는 構能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基準」第91條의 規定에 의한 原價配分의 原則에 相應하는 內容이라 하겠다.

#### ② 貸借對照表價額의 決定

歷史的 原價는 일 반적으로 資產評價의 基礎로 인정된다. 그러나, 資產의 種類에 따라 약간의例外가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첫째로 商品, 製品, 半製品, 原材料 및 在工品등의 在庫資產은 원칙적으로 製造原價 또는 購入價額에 附帶費用을 加算하고, 여기에 個別法, 先入先出法, 平均原價法등의 方法을 適用하여 算定한 取得原價로서 貸借對照表價額으로 한다는 趣旨를 定하고 있다. 그러나, 但書에서 時價가 取得原價보다 현저하게 下落한 때는, 回復할 可能성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時價로서

## 日本企業會計原則의體系와特徵

貸借對照表價額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우기, 이는 「企業會計原則注解」의 〈注 9〉 〈10〉 및 〈注 21〉에 의하여補強되고 있음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둘째로 有價證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購入價額에 手數料등의 附帶費用을 加算하여, 이에 平均原價法등의 方法을 적용하여 算定한 取得原價로서 評價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證券去來所의 時勢가 있는 有價證券에 대해서는, 回復할 可能性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時價로서 評價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在庫資產의 評價方法을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證券去來所의 時勢가 없는 有價證券中, 株式에 대해서는 當該會社의 財務狀態를 反映하는 株式의 實價가 顯著하게 下落한 때에는相當한 減額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더우기, 所有하는 社債에 대해서는, 社債金額보다 낮은 價額 또는 높은 價額으로 購入한 경우, 그 差額에相當하는 金額을 償還期에 이르기 까지 每期一定한 方法으로 하나하나 貸借對照表價額에 加算 또는 控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企業會計原則注解」의 〈注 22〉의 補充規定). 특히, 證券去來所의 時勢가 있는 有價證券으로 子會社의 株式以外의 것에 대한 貸借對照表價額은 時價가 取得原價보다 下落한 경우에는, 低價法에 따라 時價에 의한 評價를 할 수 있도록 認定되고 있는 것에 注意를 要한다.

셋째로 받을어음, 外上賣出金, 其他의 債權에 대한 貸借對照表價額의 決定은 債權金額 또는 取得價額으로 부터 정상적인 貸損豫想額을 控除한 金額으로 한다. 그러나 債權金額보다도 낮은 金額으로 取得한 경우에는 當該金額을 貸借對照表價額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差額에 상당하는 金額을 癿濟期에 이르기까지 每期 일정한 방법으로 하나하나 貸借對照表價額에 加算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企業會計原則注解」의 〈注 23〉의 規定).

넷째로 有形固定資產은 減價償却累計額을控除한 金額을 貸借對照表價額으로 한다. 有形固定資產의 取得原價에는 원칙적으로 當該資產의 引受費用등의 附帶費用을 포함하여 計算하도록 하는 점은 在庫資產의 경우와 똑같다. 또 現物出資로서 받은 固定資產에 대해서는 出資者에게 交附된 株式의 發行價額을 取得原價로 한다. 특히, 國庫補助金, 工事負擔金등으로 取得한 資產에 대해서는 壓縮記帳을 하는 것이 稅制上有利하기 때문에 國庫補助金에 상당하는 金額을 그 取得原價에서 控除할 수가 있다(「企業會計原則注解」의 〈注 24〉). 傷却이 끝난 有形固定資產은 除却되기까지 殘額價額 또는 備忘價額으로 記載함으로서 그 存在를 明示할 必要가 있다.

다섯째는 無形固定資產에 대한 것인 바, 이는 當該資產의 取得을 위하여 支出한 金額에서 減價償却累計額을控除한 金額으로 評價한다. 有償으로 讓受하거나 合併에 의하여 取得한 것에 한하여 貸借對照表에 計上할 수가 있고, 自己創造의 營業權價額을 貸借對照表에 計上하는 것은 認定되지 않는다. 그리고 營業權은 每期均等額 以上을 傷却하도록 하고 있다(「企業會計原則注解」의 〈注 24〉의 補充規定).

여섯째로, 在庫資產이나 有形固定資產등을 無償으로 取得한 경우에는公正한 評價額을 取得原價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贈與나 그 외의 無償으로 取得한 資產은 그 管理保全

이 이루어져, 그의適正한配分이나,有效한利用이可能하게된다. 그래서會計的으로는 이러한資產을貸借對照表에計上함으로써,企業의正確한財務狀態의表示를可能하게하여,특히이것을알맞게費用化함으로써經營成績을適正하게表示할수있도록하는것이보장된다고하겠다.<sup>32)</sup>

## 5. 聯結財務諸表原則

### (1) 聯結財務諸表原則의設定

日本에서의聯結財務諸表는 1975年 6月 24日附로確定公表되었는 바, 이는大藏省企業會計審議會가 1967年 5月 19日附로「聯結財務諸表에관한意見書」를公表하고,企業,公認會計士,會計學者,證券去來所등關聯團體에聯結財務諸表의制度화에대한方向을提示하여,이에대한意見과批判을求하였던데서비롯된다. 그後, 1971年 6月 22日에大藏大臣이企業會計審議會앞으로證券去來法에根據를둔企業內容의公示制度를強化하는方策의一環으로서聯結財務諸表의制度화에관한諮詢을請하였다. 이것을받은企業會計審議會는數次에걸친會合을通하여,이問題에대한審議를거듭한끝에,드디어1975年 6月 24日附로이에대한答申을確定하고發表하기에이르렀던것이다.

### (2) 聯結財務諸表原則의構成

이와같이日本의聯結財務諸表原則은「聯結財務諸表의制度화에관한意見書」라는題下의前文이附加되어兩者一體의聯結財務諸表原則을形成하고있다.前文은「聯結財務諸表의制度화에대하여」,「聯結財務諸表原則의設定에대하여」및「聯結財務諸表制度의運用에대하여」라고하는三部分으로成立되어있다.

聯結財務諸表原則은, ① 聯結財務諸表의目的, ② 一般原則, ③ 一般基準, ④ 聯結貸借對照表의作成基準, ⑤ 聯結損益計算書의作成基準, ⑥ 聯結剩餘金計算書의作成基準 및 ⑦ 聯結財務諸表의註記事項의七個部分으로構成되어있다. 그리고聯結財務諸表原則에는 16個의項目으로이루어진「聯結財務諸表原則注解」가添附되어있다. 그런데,여기에서는聯結財務諸表의目的과一般原則에대해서만一瞥하기로한다.

聯結財務諸表의目的은支配從屬關係에있는두개의會社로이루어지는企業集團을單一한組織體로간주하여,母會社가當該企業集團의財務狀態및經營成績을綜合的으로報告하기위하여作成하는데두고있다. 이러한單一organization體를위한會計處理의指針이表示된것을聯結財務諸表原則이라한다.法的으로는獨立된會社이기는하지만,經濟的,實質적으로는支配從屬關係

32) 이것은日本의「企業會計原則注解」의〈注 24〉의補充規定에準據하여補完된內容인것이다.

## 日本企業會計原則의 體系와 特徵

係를 갖고 結合된 企業들로 構成되는 企業集團의 經營成績이나 財務狀態를 綜合的으로 報告하는 聯結財務諸表는 그 組織體에 관한 公示의 手段으로 되는 것이다.

聯結財務諸表原則에 提示된 一般原則은 聯結財務諸表에 관한 會計處理 및 報告活動에 관한 方向이나 制約條件으로서의 機能을 갖고 있으므로, 「企業會計原則」의 一般原則에 相應하는 것이다. 原則命題로는, ① 貞實性의 原則, ②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會計原則에 準據하여 作成된 個別財務諸表를 基礎로 하여 聯結財務諸表가 作成되어야 한다는 個別財務諸表基礎의 原則, ③ 明瞭性의 原則, ④ 繼續性의 原則 및 ⑤ 重要性의 原則<sup>33)</sup>의 五個로 構成되어 있다 特히, 個別財務諸表基礎의 原則은 「企業會計原則」의 一般原則에 規定되어 있는 正規簿記의 原則에 相應하는 것으로 判斷된다.

다음으로 一般基準에 規定되고 있는 것은 우선 聯結의 範圍가 定해지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母會社가 모든 子會社를 聯結의 範圍에 包含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 原則은 母會社의 定義를 밝히고 있다. 즉 다른 會社의 過半數의 議決權을 實質的으로 所有하고 있는 會社를 母會社로 하고, 該當되는 他會社를 子會社로 하고 있다. 母會社를 이와 같이 定할 경우, 母會社 내지 子會社가 또 다른 會社의 議決權있는 株式의 過半數를 實質的으로 所有하게 된다면, 當該他會社도 역시 子會社로 看做하도록 되어 있다.

同原則은 聯結決算日에 대해서도 聯結財務諸表의 作成에 관한 期間을 一年으로 規定하고 있는데, 母會社의 會計期間에 따라 年一回 일정한 날을 聯結決算日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子會社의 決算日이 聯結決算과 다른 경우에는, 子會社는 聯結決算日에, 正規決算에 準하는合理的인 節次에 따라 決算을 行하지 않으면 안된다.<sup>34)</sup>

母會社의 會計處理原則 및 節次에 대하여 相違함이 있는 경우에는, 뭘 수 있는限, 子會社가 採用하고 있는 原則 및 節次를 母會社의 그것에 統一시키도록 해야한다고 要求하고 있다.

끝으로 在外子會社등이 外貨로 表示된 財務諸表 項目을 換算하는 경우에는 「企業會計上의 個別問題에 관한 意見書」(1968年 5月 公表)와 같은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인정되는 換算基準에 準據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 IV. 日本「企業會計原則」의 特徵

日本「企業會計原則」은 1949年에 設定된 以來, 各種意見書와 聯結財務諸表原則등이 公表되어

33) 重要性의 原則은 「聯結財務諸表原則」에는 規定되어 있지 않으나, 「聯結財務諸表原則注解」의 <注 1>에 의하여 詳細히 規定되어 있음에 注意할 필요가 있다.

34) 이에 대해서는 「聯結財務諸表原則注解」의 <注 5>에 補完되고 있다. 『다만, 決算日의 差異가 二個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子會社의 正規의 決算을 基礎로 하여 聯結決算을 行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決算日이 다른 때문에 發生하는 聯結會社間의 去來에 관한 會計記錄의 中요한 不一致에 대하여서만 必要한 整理를 行한다.』라고.

日本에 있어서의 會計實務를 指導改善하고 統一化함으로서, 社會的으로 커다란 役割을 담당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日本의 會計理論을 發展시키는 데도 한 뜻을 담당해왔다고 할 수 있다. 黑澤清教授가 會計原則의 形成이야말로 近代會計學의 形成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言及한 것처럼<sup>35)</sup>, 「企業會計原則」은 日本會計學의 近代化에 指導的인 機能을 담당해왔다고 할 것이다.

日本「企業會計原則」이 갖는 特徵은 다음과 같은 諸點으로 集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會計思想의 側面에서 그 特徵을 찾는다면, 그것은 近代會計理論에 根據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日本「企業會計原則」의 形成에 크게 영향을 미친 近代的 會計理論으로는 1930年代에서 1940年代에 이르는 사이에, 美國에서 展開된 會計理論을 들 수 있다. 즉, 美國에 있어서의 會計原則探究運動이 日本「企業會計原則」의 形成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日本國內에서 研究發展시켜온 獨逸의 動的貸借對照表觀이 確固하게 뿌리를 내린 事實도 「企業會計原則」의 理論的 背景을 考察할 때 看過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은 資本과 利益과의 區分을 土臺로 하여, 一定期間의 實現利益에 費用을 對應시키므로서, 期間損益을 計算하는 것을 企業會計의 中心機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取得原價主義를 基礎로 하여 費用과 收益의 期間配分을 會計의 基礎構造로 보고, 貸借對照表의 資產을 動態의 側面에서 理解하고 있다. 따라서, paton의 學說<sup>36)</sup>에 입각한 企業體說에 基礎를 두고, 資本去來에 의한 경우의 變動과 損益去來에 의한 持分變動과를 明確히 區別하는 것이 前提로 되어 있다. 더우기 Going Concern의 前提下에 次期以後의 企業活動과 關聯하여 貸借對照表가 作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貸借對照表를 中心으로 하는 持分計算의 會計思想보다도, 損益計算書上에서 期間的으로 費用과 收益을 對應시켜 損益을 計算하는 것을 더욱 重要視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것은 日本「企業會計原則」의 會計理論의 特徵을 간단히 整理해 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日本「企業會計原則」의 特徵은 他國의 會計原則와 比較함으로서 더욱 명백히 나타난다. 이와 같은 特徵에 대해서 中島省吾教授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첫째로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은 外國의 그것과 比較하여 綜合的으로 體系化된 形態로서 集約된 原則書라는 點에 하나의 特色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美國 AAA의 경우는 처음부터 綜合的이고 體系的으로 會計基準이 展開되고 있으나, AICPA의 경우에는 斷片의이고 個別의 側面에서 여러 가지 原則이 公表되어 있는 바, 그것들이 하나의 體系下에 包含되어 있는 것은 會計研究叢書(ARS)로서, 그것도 既發表物의 것들을 整理하는 形態이었다. 日本「企業會計原則」이 最初부터 體系化된 綜合的 原則書의 形態를 取한 것은 類例가 드문 特色있는 方式이라고 思

35) 黑澤清, 「會計原則の形成」(企業會計 第9卷 第3號, 中央經濟社, 1957); 黑澤清編, 新しい會計學 第1卷(東京, 日本經營出版社, 1972), p. 60.

36) W.A. Paton, Accounting Theor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22), pp. 471~499.

37) 黑澤清, 阪本安一, 久保田音二朗 監修, 前掲書, pp. 122~124.

## 日本企業會計原則의 體系와 特徵

斜된다. 역시 韓國의 「企業會計基準」이 日本의 그것과 類似한 形態를 取하고 있다는 點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한다.

둘째로, 다른 나라의 會計原則은 會計士團體의 會員들이 會計監查의 經驗을 土臺로 하여 會計原則을 集大成한다고 하는 經路를 거치고 있으나, 日本의 그것은 會計監查의 實務가 始作되기 前에 우선 「企業會計原則」이 生成되었다고 하는 特異한 경로를 跟았음에 差異가 있다. 그러므로 他國의 경우와 같이, 企業 및 會計士의 實務內容이 多樣한 것을 規制한다고 하기보다는 아직 實務慣習이 成立되기 前에 啓蒙的인 役割을 遂行할 것을 目標로 하여 「企業會計原則」은 成立되었던 것이다. 當時의 日本에서는 近代的인 會計慣行이 未熟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것을 早急하게 確立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會計上의 基礎的인 原則이 과감히 提示되었음을 말해준다. 여기에 「企業會計原則」이 育成의이고 教育의인 立場에서 發生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一般原則에 있어서의 剩餘金區分의 原則은 바로 이러한 趨旨의 代表的인 例라 할 것이다. 즉, 日本에는 원래 剩餘金이라고 하는 會計慣行이 存在하지 않았다고 하는 點이 「企業會計原則」의 重要한 特徵이라고 일컬어진다.<sup>38)</sup> 이와 같은 事實은 山下教授의 다음과 같은 所說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sup>39)</sup> 『財務諸表의 體系中에 새로 導入되고 있는 剩餘金計算書는 완전히 美國의 會計實務속에서 자라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思考는 확실히 企業會計의 近代化를 促進하는 意味에서 환영해야 될 思想이기도 하다. 즉, 剩餘金(Surplus)이라고 하는 觀念은 이번의 「企業會計原則」에 의하여 새롭히 企業會計中에 導入된 것이고, 이러한 會計思想에서 導入된 剩餘金計算書는 「企業會計原則」에 있어서도 역시 注目하지 않으면 안될 功績이라고 할 수가 있다.』

日本 「企業會計原則」의 發展史의 側面에서 보면, 商法 및 稅法과의 相互調整努力이 反映되고 있다는 點에 하나의 特色있는 面을 發見하게 된다. 즉, 商法 및 稅法과의 調整過程에서 그들과의 部分的인 「妥協」이 이루어짐에 따라, 「企業會計原則」이 갖는 會計理論의in 一貫性을 크게 「損傷」시켰다는 點<sup>40)</sup>은 그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次元에서, 「企業會計原則」의 本然의 姿勢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本來의 機能을 찾아서 會計理論의in 一貫性을 찾을 수 있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料된다.

다음에 「企業會計原則」의 構造的인 面에서 特色을 模索해보면, 그것은 一般原則을 上位에 두고, 그 下部構造로서 損益計算書原則과 貸借對照表原則을 두어, 財務諸表의 作成에 관한 諸原則을 提示하고 있다는 點이다. 특히 이것은 「企業會計原則註解」를 設定하고 있으며, 1975年에는 「聯結財務諸表原則」을 別途의 原則으로 公表하고 역시 「聯結財務諸表原則註解」를 補足的으

38) 淺羽二郎, 前揭書, p. 165.

39) 山下勝治, 前揭書, p. 37.

40) 黒澤清, 阪本安一, 久保田音二郎 監修, 前揭書, p. 123.

## 產業研究

로 두고 있다. 더우기, 中間財務諸表에 관한 基準도 制度化하여 實施하고 있는 點은 日本「會計原則」이 갖는 또하나의 特徵이라 할 것이다. 특히, 財務諸表를 中心으로 하여 區分, 科目分類, 配列 및 評價등에 상당한 比重을 두고 規定되고 있는 점은 注目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財務諸表의 作成을 위한 樣式規定등의 關係에서 보면 適切한 發想이라고 하겠으나, 한편, 原則을 一貫하는 基本的인 會計思想을 明示한다는 面에 있어서는 그 焦點을 흐리게 하는 것이 되므로 앞으로 檢討되어야 할 課題라고 料된다.

日本「企業會計原則」이 性格의인 側面에서 갖는 特色은 規範의인 會計原則과 記述의인 會計原則, 兩者의 性格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點이다. 그 前文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企業會計原則은 企業會計의 實務속에서 慣習으로 發達한 것 中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바를 要約한 것』이라는 文言이 이를 뜻하는 內容이라 하겠다. 이는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이 演繹의인 推論과 歸納의인 導出過程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끝으로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은 大藏省大臣의 자문기관인 企業會計審議會에 의한 政府主導型(public sector)으로 審議決定되는 것이라는 點이다. 따라서 이것은 美國에 있어서 會計原則이 AAA, AICPA의 APB 및 FASB 등과 같은 民間主導型(private sector)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던 것과 比較할 때 特異하다는 점을 指摘해 두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基準」의 設定主體가 財務部에 證券審議委員會 산하의 企業會計分科委員會로서 政府主導型이라는 점에서 보면, 日本의 그것과 治似하다는 것을 發見하게 되어 注意를喚起시킨다.

## V. 結論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日本에 있어서의 「企業會計原則」은 第二次世界大戰을 前後로 한 企業會計의 統一化運動을 그 系譜로 삼고 있다. 특히, 1948年에 日本占領軍司令부의 經濟科學局統計調查課가 提示한 指示書는 日本에 있어서 戰前의 企業會計의 統一化運動을 이어받아, 戰後의 特殊한 經濟事情下에서 開花한 것이고, 또한 會計原則의 制定을 위한 運動展開의 起點으로서 「企業會計原則」의 制度의인 前提가 되었다. 그리하여 1949年 7月에 經濟安定本部에 設置되어 있던 企業會計制度對策調查會가 中間報告라고 하는 形式으로 「企業會計原則」을 公表하여 準用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은 從來의 企業會計制度를 改善統一하는 基礎가 되었으며, 그 前文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外資의 導入, 經營合理化, 公正課稅, 證券投資의 民主化 및 產業金融의 適正化등에 기여하기 위한 會計原則으로서의 基盤을 確立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設定되어 30餘年이 經過하는 동안 數次에 걸친 改正作業을 거치면서 企業會計의 實務에 대한 指導原理로서의 機能을遂行해 왔다고 하겠다. 특히, 그것이 證券去來法에 根據를 둔 「財務

### 日本企業會計原則의體系와特徵

諸表規則」의 制定과 改正, 商法 및 稅法등 關係法令의 改正을 비롯하여, 公認會計士에 의한 監查制度의 確立과 더불어 그 會計行爲의 指針으로서 社會的인 役割을 담당해온 事實은 本論에서도 언급한 바이다. 그리고 最近에 이르러 聯結財務諸表의 制度는 물론, 中間財務諸表基準의 表等은 日本「企業會計原則」의 制度의 基盤을 擴充하고 있음을 뜻한다.

戰後 日本에 있어서 會計學에 관한 研究의 대부분이 「企業會計原則」을 基軸으로 하여 展開되어 오고 있는 事實은 會計原則論의 研究가 會計學 또는 會計理論의 發展에 重大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나머지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日本에 있어서의 「企業會計原則」이 企業會計의 實務와 理論의 兩面에서 그 指導的인 原理로서의 社會的 機能을 逐行함으로써 日本에 있어서의 會計學의 劃期的인近代化를 가져오게 하는 促進劑의 存在가 되고 있음을 注意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料된다.

近年에 이르러 日本은 經濟의 國際化에 따른 多國籍企業의 出現으로 會計原則의 國際的인 統一化運動에 頤승하여 IASC의 創立會員國으로서 國際會計基準의 制定에 參加하여 盡力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事情下에 놓여있는 日本이 앞으로 새로운 國際化時代의 會計環境에 어떻게 對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注目되는 바이며, 따라서 이러한 會計環境에 對應하는 「企業會計原則」의 改善 및 發展에 대한 日本의 役割期待는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國際會計基準이 成立되기 위한 첫째 條件으로서는 各國의 會計原則에 대한 比較研究를 逐行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料되는 바이다. 왜냐하면 會計原則에 대한 比較研究가 行해짐으로서, 自國의 會計原則에 대한 批判과 理解가 可能하게 되며, 自國에 있어서의 會計原則의 充實化는勿論, 制度會計의 水準의 向上에 기여하는 効果가 期待되기 때문이다.

